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9년 02월 17일, 개정 2011년 02월 25일, 개정 2014년 03월 19일, 개정 2014년 07월 01일
개정 2016년 09월 21일, 개정 2017년 11월 03일, 개정 2019년 04월 19일, 개정 2023년 07월 27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의 목적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조 (사무관장) ① 장학기금의 모금활동,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 및 예산배정, 장학생의 추천과 그 지급업무는 기획·대외부원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3. 7. 27.>

② <삭제 2023. 7. 27.>

③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대학원 학생상별위원회의 심의 및 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대학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2. 신입생이나 재학생 중에서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기준은 별도로 정함)
3. 대학원 재학조교
4. 학생회 및 학생자치 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5. 기타 학생상별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내에 장학금 신청서 1부와 제 2항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②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단 제4조 제2,3호에 의한 신청자 제외)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호의 신청자의 경우 경제상황 증빙 서류(기혼자의 경우 부모의 경제상황 증빙 서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11. 3.>
2. 제4조 제4호의 신청자의 경우 각종 활동 관련 증빙 서류

③ 제4조 제1호의 신청자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19. 4. 19.>

제6조 (신청자격의 제한) ①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원칙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재입학
2. 징계(유기정학 이상) 해제
3. 장학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기타 학칙 위반자

제7조 (지급시안의 심의와 승인 및 추천과정) ① 기획·대외부원장은 제5조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매학기 장학금 배정 총목과 액수 및 수혜자격 조건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시안을 작성하여 대학원 학생상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3. 7. 27.>

② 학생상별위원회는 제1항의 장학금 지급시안을 서류심사를 통하여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을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학생상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 (추천 및 선발기준) ① 대학원의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행한다.

1. 학업성적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법학전문박사과정은 6학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국가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3. 19.><개정 2014.7.1.><개정 2016.9.21.><개정 2017.11.3.><개정 2023. 7. 27.>

2. 가정 사정을 각별히 고려한다.

3. 장학생 수의 학년간 균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4. <개정 2014.7.1.><삭제 2019. 4. 19.>

② 법학전문석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개정 2019. 4. 19.><개정 2023. 7. 27.>

1.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총액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교내장학금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지급기준액) ①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매 학기마다 대학원 학생상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가계곤란자가 지급받는 생활장학금 및 가계곤란자가 학생회 임원활동을 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9. 4. 19.>

③ 제2항의 가계곤란자가 학생회 임원활동을 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생활장학금에 합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 4. 19.>

제11조 (지급방법) 기획·대외부원장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1. 등록금 감면

2. 학생증 연계 계좌이체

3. 기타 학생상별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제12조 (군소장학금 통합지급) 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대학원 학생상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군소장학금의 통합을 비롯한 제반 필요한 조치를 기획·대외부원장이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부 칙 (2009. 2. 17.)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학생상벌위원회가 결의하고 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1. 2. 25.)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9.)

제1조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1.)

제1조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1.)

제1조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3.)

제1조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1호)은 2017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9.)

제1조 (시행일) 본 개정규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27.)

제1조 (시행일) 본 개정규정(제3조제1항, 제7항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은 2023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